

Gain Perspective, Broaden Vision, Share Experience

조정중재팀 조사관 장 성 원

I. 들어가며 : 연수 목적과 취지

1981년 설립 이후 창립 당시는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소송에 비해 생소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꾸준히 해결해온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대한민국내 최고의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 또는 Dispute Resolution)¹⁾ 기관'을 넘어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해외에 전파할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다.

언론 전문 ADR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법학 지식 및 언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협상, 조정, 중재 등 ADR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즉 조정의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사이의 감정 및 관계를 잘 파악하고 대립을 완화할 뿐 아니라 양자 간 간극을 부드럽게 좁혀 주며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하

는 능력(이른바 "People Skill")의 배양이 중요하다.

ADR에 관한 논의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미국 대학에서는 일찍이 설득, 협상, 조정, 중재 분야를 학문의 지위에 올려 법학과, 신문방송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등에서 강의 및 연구를 하여 왔으며, 특히 각 대학의 Law School 내 특수 과정으로 각종 ADR 및 Dispute Resolution Program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미국 내 ADR제도와 실제에 있어서 학문적 배경과 실천적 바탕이 되고 있다.

금번 연수자들²⁾은 미국 방문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핵심 업무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ADR 및 Dispute Resolution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우리 위원회의 경험을 공유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미국의 우수한 대학의 Dispute Resolution 과정³⁾ 중 가능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교수진 및 관계자들과

1) 필자는 협상, 알선, 조정, 중재 등을 통칭하여 ADR로만 알고 있는데, 막상 미국에 가보니 Alternative를 뺀 'Dispute Resolution'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었다. ADR이 워낙 발달하다보니 '대체'나 '보완'이 아닌 독자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2) 2008년 해외실무연수자인 필자와 총무팀 김태호씨는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미국 버몬트 주(우드스타), 보스턴, 뉴욕, 워싱턴D.C, LA를 차례로 방문하였다.

3) 매년 미국 대학 순위를 매기고 있는 the U.S. News and World Reports 선정 각 대학 로스쿨 내 'Dispute Resolution' 과정 순위(2008년)는 다음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http://gradschools.usnews.rankingsand-reviews.comgrad/law/dispute> 참조).

1위. Pepperdine University (Malibu, CA)

2위.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10위. Fordham University (New York, NY) (3위~9위 생략)

대화하였다.

또한 AAA(미 중재협회), 변호사협회 등 비영리단체, 미 법무부 및 지방법원 등 정부기관, JAMS 등 민간 조정서비스회사 등을 방문하여 각종 ADR 정보를 얻고, 운영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그들의 ADR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자 노력했다.

II. 본문 : 세미나 참가 그리고 방문의 연속

1. 대학교 ADR & Dispute Resolution 관련 기관(과정)

가. Strau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in Pepperdine Law School⁴⁾

1986년 창립 이래 Straus Institute는 미국 내 ADR과 분쟁해결 분야에서 선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the U.S. News and World Reports가 매년 선정하는 각 대학 로스쿨 내 'Dispute Resolution' 과정 평가에서 최근 12년 동안 7번 1위를 했고 평가 개시 이후 3등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한다. Straus Institute에서는 Mediating the Litigated Case, Professional Skills Program in Dispute Resolution과 같은 단기 전문교육과정뿐 아니라 Master(3년) 및 LLM(1년) 등 다양한 석·박사과정이 있으며, Faith Based Initiatives, International Study Tours, Straus Videos 등 각종 프로그램도 운용하고 있다.

연수자들은 Los Angeles 말리부에 위치한 Pepperdine 로스쿨을 방문해 Straus Institute의 Managing Director인 Peter Robinson 교수와 Academic Director인 Tom Stipanowich 교수를 만나 기관 현황을

듣고 그들의 수업을 참관하였다. Robinson 교수의 수업은 '조정이론과 실제' 과목으로 수업 중간에 role-playing을 1시간 했는데, 유명 스포츠 구단주가 사무실 여직원에게 대해 성희롱을 한 사건을 놓고 조정인(mediator), 양 당사자 그리고 각 대리인(변호사) 역할을 맡은 학생 5명이 한 팀이 되어 조정을 경험해보는 자리였다. Stipanowich 교수의 수업은 '중재' 과목으로 교수가 중재인(arbitrator)이 되고, 학생 중 원고 및 피고 대리인을 선정해서 실제 중재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교수들이 학교 현황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도 아시아 및 한국의 ADR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현재 매년 북경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한국의 이화여대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 Professional Skills Program in Dispute Resolution 프로그램

이번 미국 연수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앞서 언급한 Pepperdine대의 Straus Institute가 Vermont 로스쿨과 공동 주관한 3일 과정의 워크숍인 Professional Skills Program이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조정하고 있을까' 하는 필자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줌과 아울러 미국 조정전문가들의 내공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이 프로그램은 1년에 2번 미 동부·서부(서부는 말리부 Pepperdine 캠퍼스, 동부는 매년 바깥)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3일간 계속되는 총 19개의 워크숍 코스와 32명의 강사진, 200여명의 참석자로 구성되며 등록비는 1,095달러(공공기관 종사자는 695달러)이다.

미국 보스턴 북쪽으로 차로 달려 3시간 거리인 버

4) <http://law.pepperdine.edu/straus/>

몬트 주의 Woodstock에서 열린 2008년 가을 프로그램에서 연수자들이 선택한 코스는 <STAR: A Systematic Approach to Mediation Strategies(조정 전략의 체계적 접근)>로 강사는 Pepperdine의 Robinson 교수와 Eric Lindauer 변호사였다. 18시간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워크숍의 전체 내용은 지면 제약상 다른 기회를 통해 소개하기로 하고,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유능한 조정자는 조정의 각 단계와 드러난 주제에 대해 잘 인식하며 각 단계별로 스타일과 기법을 잘 활용한다는 것으로, 조정의 각 단계(당사자 소집-조정 개시-의사소통-협상-종결), 의사소통의 원활화, 문제해결의 장려, 중립성과 공정성의 조화, 감정의 관리, 조정자의 윤리 등의 강연을 듣고 토론하였다.

필자는 25년 동안 소송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 client들에게 소송이 너무 힘든 점을 고심한 나머지 현재 조정중재로만 활동을 하고 있는 Lindauer 씨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히 조정자(mediator)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질은 인내(patience)와 끈기(persistence)라는 말에 깊이 공감했다.⁵⁾ 또한 조정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4가지 factor, 즉 Risk(법원 소송의 경우 질 수도 있다는 점), Cost(비용), Time(시간), Finality(종결, 조정을 통해 분쟁을 끝지 않고 끝낼 수 있다는 점)를 강조한다는 강사의 말을 듣고 한국에서 조정을 진행하다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던 SBS '신의 길 인간의 길' 사건이 떠올랐다.⁶⁾

다. 하버드대 로스쿨 '협상 프로그램'
(Programs on Negotiation, PON)⁷⁾

하버드대 로스쿨에 있는 대학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 센터 겸 커뮤니티인 PON은 하버드대뿐 아니라 MIT 및 터프츠(Tufts) 대학의 교수진, 학생(대학원생),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상 및 ADR 연구센터다. 1983년에 특수 연구 프로젝트(Harvard Negotiation Project)로 시작된 PON의 목적은 협상과 분쟁해결분야의 이론과 연습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현재까지 세계적인 협상 스킬로 명성을 쌓아왔다. 협상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이 아이디어를 공유할 각종 세미나, 워크숍, 포럼을 개최하며 각종 발간물을 통해 학생과 변호사, 기업인, 공공기관 임직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협상과 분쟁해결분야에서 포괄적인 훈련과정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필자는 PON의 실질적인 설립자이며 협상분야의 고전이자 베스트셀러인 'Getting to Yes: 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⁸⁾의 저자인 Roger Fisher 교수를 꼭 만나고 싶었으나 교수 일정상 결국 만날 수가 없었다. 대신 PON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협상분야의 또 다른 명저인 'Beyond Winning: Negotiating to Create Value in Deals and

5) 이 분은 항상 조정심리 전에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회의실 문을 연다고 한다. 강의 중 실제 조정을 가정해 오프닝 멘트를 하기도 했는데 조정인의 배려, 관록과 지혜가 오롯이 담긴 speech여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6) 이 사건은 필자가 서울제3중재부 조사관을 하면서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근본(복음)주의로 흐르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SBS 4부작 다큐멘터리에 대해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대책위를 구성해 정정 및 사과를 요구한 사건이다. 양 당사자 모두 내심 본 사건이 중재위에서 해결되기를 원했고, 사건의 종결(Finality)을 강조한 중재부에 의해 결국 쌍방 유감표명으로 합의되고 심리 중 취하로 종결되었다.

7) <http://pon.harvard.edu>

8) 원칙화된 협상(principled negotiation)과 단일텍스트협상(single-text negotiation)을 주창한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와 사람을 분리시켜라. 둘째, 입장이 아닌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라. 셋째, 상호 이익이 되는 옵션을 개발하라. 넷째, 객관적인 기준의 사용을 주장하라.

Disputes'를 저술한 Robert Mnookin 교수를 어렵사리 만나 미국 조정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Mnookin교수는 미국 ADR은 이론과 실제에 있어 정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면서 실제 ADR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때는 과도한 소송비용을 꺼린 미국 회사들(법률시장의 가장 중요한 수요자)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했다. 또한 한국도 법률시장이 분화되고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 ADR 교육과정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라. 포덤(Fordham)대학교 로스쿨 분쟁해결 및 ADR 프로그램⁹⁾

뉴욕 링컨센터에 위치한 Fordham 로스쿨은 로스쿨 자체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분쟁해결 및 ADR 프로그램 역시 미국 내외의 관련 분야의 교육과 학문연구 그리고 실제 조정업무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상, 조정, 중재, 국제분쟁 해결에 관한 각종 코스와 대외 클리닉이 있으며 미 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협상조정중재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계속 거두고 있다.

연수자들은 ADR프로그램의 Director인 Jacqueline Nolan-Haley 교수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Nolan-Haley 교수는 Fordham 로스쿨에서 ADR분야 강의를

전담하고 있는 교수이자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저자로, 윌스트리트와 UN이 있는 뉴욕의 상업적, 국제적 이점을 포괄해 ADR프로그램이 잘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Nolan-Haley 교수는 우리 위원회가 언론조정(journalism mediation)을 한다는 점에 매우 흥미를 보이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또한 며칠 후 Fordham 로스쿨에서 열리는 전국 협상경진대회(Negotiation Competition) 북동부지역 예선에 참관해 보라며 초대해줘 미 로스쿨 학생들의 진지한 협상경연을 참관해 보는 흔치 않은 기회도 가졌다.¹⁰⁾

2. ADR 관련 기구

가. 미 중재협회(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¹¹⁾

ADR 영역에서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갖고 있으며 미국 ADR(특히 중재분야)을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not-for-profit)기관¹²⁾인 미 중재협회는 법원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개인과 단체에 ADR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분쟁해결절차에서의 협회 역할은 조정에 따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뿐 아니라 국제 분쟁도 국제분쟁해결센터

9) <http://law.fordham.edu/adr.htm>

10) 미 변호사협회(ABA)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대회로 Fordham 로스쿨의 학생 동호회 중 하나인 Dispute Resolution Association이 이 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협상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2명씩 짝이 되어 원고 및 피고의 대리인(변호사) 역할을 맡아 4명의 심사관(judge)앞에서 서로 30분간 협상한 후 심사관의 코멘트를 듣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필자는 경연 팀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 4시간이 넘게 앉아 있다가 지쳐 중간에 나가려 했으나 교수님의 제지로 결국 끝까지 참관했다.

11) <http://www.adr.org/>, 보통 '트리플 A'라고 부른다.

12) 필자는 이번에 우리가 통상 비영리기관으로 부르는 기관이 non-profit과 not-for-profit로 나뉜다는 사실을 처음 배웠다. 전자는 순수한 비영리목적 기관으로 돈이 남으면 전부 돌려주는 곳이며, 후자는 돈을 벌되 돈(이익)이 목적이 아닌 단체로 사기업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문화예술위원회는 non-profit, 예술의 전당은 not-for-profit로 볼 수 있을 듯하다.

(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ICDR)를 통해 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 서비스에는 조정인과 중재인의 선임, 심리 준비, 해결 옵션에 대한 정보 제공, 조정을 통한 해결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중재 또는 조정을 통한 사건 해결을 지향한다. 또한 기업, 조합, 정부기관, 법률회사 및 법원에 ADR 시스템을 공급하고, ADR 분야의 연수와 교육(AAA University), 책자 발간도 시행하고 있다.

연수자들은 먼저 AAA에서 Fordham 로스쿨 강당을 빌려 개최한 ‘Ask & Answer: Arbitration’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중재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노련한 중재인(arbitrator)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중재 일반 및 예비심리단계, 중재인의 윤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세미나 중 특히 인상 깊었던 사람이 2명 있었는데, 첫 번째는 토론 진행자로 나온 Eugene Farber 변호사로, 오랜 경험과 관록이 담긴,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파고드는 언변과 카리스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Farber 변호사는 조정이 진행되다가 중재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중재 계속 중에 한쪽 당사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중재 중 나온 얘기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중재인의 권한에 대한 토론을 이끌었다.¹³⁾

두 번째 인상 깊었던 사람은 마무리 발언을 한 AAA의 General Counsel(법무실장)인 Eric Tuchman

씨로, 미국의 중재가 지금 갈림길(crossroads)에 있다면서, 중재의 발전을 좌우하는 3가지 요인은 당사자의 요구(needs of parties), 의회(Congress)의 입법, 그리고 법원(Court)의 시각(특히 대법원 판결)임을 강조했다.¹⁴⁾

연수자들은 세미나 후 뉴욕 브로드웨이에 있는 AAA 뉴욕본사를 방문해서 Sandra Partridge 부회장, Michael Lee 변호사¹⁵⁾와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세련된 뉴욕커인 Partridge 부회장은 AAA가 요즘 아시아에 관심이 많다면서 고위 임원임에도 직접 사무실 및 심리실을 안내해 주고 많은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 주었다.

나. 미 변호사협회 분쟁해결부(The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Dispute Resolution)¹⁶⁾

미 변호사협회의 분쟁해결부에서는 소속 회원과 일반인들에게 분쟁해결 영역에서 다양성을 증진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서비스의 각종 문제해결능력과 우수성 향상을 위해 각종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백악관 근처에 위치한 미 변호사협회를 방문한 연수자들은 Staff Attorney인 David Moora 씨와 Deputy Program Manager인 Stephen Kotec 씨를 만나 협회 내 분쟁해결부의 회원이 현재

13) 이 장면에서 필자는 다시금 SBS ‘신의 길 인간의 길’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세미나가 끝난 후 Farber변호사에게 나도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서 당신은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I couldn’t do anything about it because I did not have any authority.”라고 대답해 중재가 철저히 client-driven procedure(당사자 중심 절차)임을 확인시켜 줬다.

14) 필자는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위원회의 주 고객인 언론사 및 국민(이용자만족도조사 등), 국회에서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법원의 언론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15) 재미있는 것은 한국인인 Michael Lee변호사의 AAA내 직함이 Case Manager인데, 조정수수료 산정 등을 제외하면 업무내용이 중재위원회의 조사관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중재위 조사관의 영문 명칭을 case manager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것 같다.

16) <http://www.abanet.org/dispute/>

18,000명에 달하지만 1993년에 처음 이 부서가 생겼을 때 내부의 반발이 상당했었다는 등 여러 흥미 있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분쟁해결부는 실제 조정을 하지는 않고 ADR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와 협조하며 각종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등으로 ADR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한다.¹⁷⁾ 또한 미국에는 조정중재인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협회 등에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지역 변호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다. 미 법무부 분쟁해결국(Office of Dispute Resolution in Department of Justice)¹⁸⁾

미국은 연방정부가 관련된 모든 분쟁에서 ADR을 먼저 시행하도록 법률(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에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 법무부 내에 설치된 분쟁해결국에서는 각 부처에서 ADR을 잘 활용하는지 평가하고,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국내외 민간 ADR기관과도 활발히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교류하고 있다.

필자가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친절한 Joanna Jacobs 국장은 조지타운대에서 ADR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 겸 변호사로, 분쟁해결국의 업무, 미국의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해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설명해줬을 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 업무 및 현황(운영재원, 통계유지, 한국 저널리즘현황 등)에도 여러 질문을 하면서 진지하고도 좋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라.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nflict Prevention & Resolution (CPR)¹⁹⁾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CPR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ADR을 혁신하고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회원제 비영리 기관으로, CPR회원들은 분쟁해결을 원하는 경우 CPR의 도움으로 적절한 조정중재인(neutrals)을 선임할 수 있다. CPR은 연례 컨퍼런스 외에도 ADR관련 연구와 교육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수자들은 뉴욕 렉싱턴 가에 위치한 CPR본사를 방문해 Helena Erickson 선임부회장 및 editor인 Russ Bleemer 씨를 만나 CPR의 업무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AAA와 다른 점은 회원제 조직으로, CPR의 staff들은 개별 조정중재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의뢰를 받아 조정중재인을 연결시키며, 이후 모든 사항은 neutral들이 진행한다고 한다. 언론계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현직 변호사이며 현재 CPR의 정기간행물인 Alternatives의 editor인 Bleemer 씨는 경력에 걸맞게 우리 위원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실제 미국 내에서도 언론보도분쟁을 ADR을 통해 해결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마. The Judicial Arbitration & Mediation Service (JAMS)²⁰⁾

미국 내 사설 조정중재회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

17) 필자가 보스턴과 뉴욕 등을 다니면서 ADR전문가들을 만났다고 하니 내년(2009년) 4월에 뉴욕에서 미변호사협회 분쟁해결부가 주관하는 연례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그 사람들을 포함해 미국 내 ADR전문가들을 한 번에 모두 볼 수 있다고 했다.

18) <http://www.usdoj.gov/odr/index.html>

19) <http://www.cpradr.org/>

20) <http://www.jamsadr.com/>

랑하는 JAMS는 과거 합병을 통해 덩치를 계속 키워 왔으며, 미국 내 21곳의 지점을 갖고 있고 본사는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위치하고 있다. 연수자들은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뉴욕 타임스 빌딩에 있는 뉴욕 JAMS 사무실을 방문해 Business Manager인 Adam Rosenfeld씨로부터 JAMS의 현황과 비전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현재 JAMS는 조정위주지만 앞으로 중재분야를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 주된 사업 분야는 고용과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다른 조정기관들과 달리 JAMS소속 neutral들은 모두 JAMS에 소속된 상근 조정인으로, 과거 경력과 능력을 고려해 JAMS에서 스카웃을 한다고 한다. 필자는 사무실 입구부터 사무실, 회의실을 자세히 둘러보며 내부 직원들과 외부 이용자들이 편안함과 전문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된 현대식 인테리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바. LA상급법원 ADR과(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ffice of the Los Angeles Superior Court)²¹⁾

LA상급법원은 9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LA지역의 각종 하급 법원을 관할하고 있는 법원으로, 연수자들은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법원의 ADR과를 방문해 Julie Bronson 과장으로부터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ADR 서비스에 대해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법원 내 ADR과가 설치된 것은 수년전 예산 부족사

태로 재판이 계속 연기되었던 것이 주된 요인이며, 과거에는 법원 조정인 명부에 누구나 등록할 수 있었으나 작년부터 법원이 인증하는 교육과정을 40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만이 법원 조정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조정중재를 원하는 분쟁당사자들은 인터넷으로 조정인의 경력, 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언어(스페인어, 한국어 등) 등 다양한 조정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

III. 맺으며 : From Good to Great ADR

이상 한 달간 연수자들은 미국의 ADR 관련 세미나를 두 군데 참석하고 관련 대학과 기구를 전반적으로 다니는데 주력했고, 당초 목표한 내용(미국 ADR의 현 주소 파악) 외에도, 미국 조정전문가들의 일반적인 ADR(특히 조정)에 대한 강의나 교육내용이 실제 우리 위원회 조정에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과 현재의 ADR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우정을 쌓은 것이 이번 연수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한다.²²⁾

연수 중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을 적어보자면, 먼저 좋았던 점으로 ADR전문가들이 참가해 서로 토론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 및 세미나에 실제 등록·참석해 미국의 조정중재의 노하우 및 실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점, 관련 협회, 대학 및 정부기관을 방문해 정보를 수집한 점²³⁾,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관심을 표하는 기관도 발견한 점이다.²⁴⁾

21) <http://www.lasuperiorcourt.org/adr/UI/index.aspx>

22) 미 변호사협회 Dispute Resolution Section에 방문해서 그 쪽의 주된 업무에 대한 설명을 꼭 듣다가 'building partnership and friendship'이라는 말이 나오기에 우리(연수자)도 그러려고 왔다고 했더니 상당히 좋아했다.

23) LA에서는 당초 SCMA(남캘리포니아 조정협회)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Robinson교수가 LA항소법원을 소개시켜줘서 법원 내 ADR과를 방문하는 더 좋은 기회를 얻기도 했다.

24) 대표적으로 AAA와 Pepperdine대 Straus Institute를 들 수 있다.

이취했던 점은 실제 조정협회나 법원에서 열리는 조정심리 참관 기회를 못 가졌던 점²⁵⁾, 당초 방문을 계획했던 뉴욕 예시바대 ADR프로그램, ACR(Association of Conflict Resolution) 등에 일정이 맞지 않아 못 갔던 점 등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위원회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우수한 미국 ADR기관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먼저 국내 조정중재기구들과 교류·연대를 충분히 한 후에 미국 AAA의 경우처럼 위원회 주도 하에 조정중재 전문가 협회나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국 내 ADR 전문교육과정이 풍부할 뿐 아니라 실질적이고 수준이 높으며, AAA 등 민간 협회 등이 주도가 되어 ADR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점이 연수 내내 부러웠다.

둘째, 앞으로 미국의 주요한 ADR기구 운영진을

정례적으로 초청하거나 공동 세미나를 주최하면 좋을 것 같다. 미국 측의 ADR 발전경험²⁶⁾과 우리 위원회의 언론조정 노하우가 상호 교류하는 자리로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해외연수기간(1달)이 세미나 참석용으로는 길고, 본격적인 연수·학습을 하기에는 짧다고 느꼈다. 위원회 업무 역량의 핵심인 인적 자원을 개발·확충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미나 참석을 위한 업무출장(1주일)과 장기 연수·유학(1년)으로 기간을 나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주요 행사 및 간행물에서도 일반적인 조정중재(ADR)의 이론 및 실체를 많이 다루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번 미국 연수에서 얻은 새로운 안목과 경험과 지식들이 넓게는 한국의 ADR 및 우리 위원회의 발전, 좁게는 연수자들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

25) AAA와 JAMS에 사전에 부탁했지만, 노력해 봤으나 당사자들의 동의를 결국 얻지 못했다면서 참관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조정은 비공개를 강조하는데, 하루 1건이 원칙이고 한번 심리를 열면 joint session(합동 심리)과 caucus(한 당사자만 심리)를 번갈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보통 수 시간 걸리며 새벽에 종결되는 사건도 많다고 한다.

26) 필자는 종래 ADR이 중요한 법의 이념인 '정의'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미국의 ADR을 일컬어 'a fast way to economic justice'라고 언급한 한 AAA 세미나의 참석자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